

1.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35호 1998. 7. 16

주요 골자

-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 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 마. 광천지,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요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 자. 종합토지세의 비업무용대상에 소하천정리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요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 등을 설립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체와 교환하는 토지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 나.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다. 1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 (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로서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준면적초과 토지가액=전체토지가액×

$\frac{\text{기준초과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text{총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나목 내지 마

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 때에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 계획 지역	· 주거전용지역	5배
	·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3배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배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7배
	· 미계획지역	4배
	도시계획지역외의지역	7배

나. 축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특별시·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에

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 건축물면적으로 본다.

라. 주차장·차고·주기장 및 정비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두수 (연중최 고두수를 말한다)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시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 (헥타르)	
1.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아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2.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7.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8.기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9.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한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1.5)]

(2)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 : 법인이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면적기준이 상하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큰 면적을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유차량(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에 자동차의 정비·유류 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3) 시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 :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입체주차시설 [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건축물·기

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 을 갖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 (4) 차고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 (5) 주기장용 토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용 토지로서 그 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기계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 (6) 자동차 정비장용 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

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마.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지역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 (2)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 (3)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제5호나목과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과 야구장운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상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

가. 연수원용 토지 : 법인이 연수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운동장면적과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text{운동장면적} = \text{강의실 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 동시 수용인원}(100\text{인 이상 } 450\text{인 미만인 때에는 } 450\text{인으로 한다}) \times 10\text{제곱미터}$$

나. 골프장용 토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 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text{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 (\text{건물연면적} + \text{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div 150\text{제곱미터} \times 13.75\text{제곱미터} \times 4$$

(3)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면적

(4) 기타 용도의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text{기타 용도의 시설물의 기준면적} = \text{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times 10$$

라.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 받은 법인이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사

- 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 마. 전용휴양소용 토지 : 법인이 종업원의 전용휴양소(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기 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 사. 노인복지시설용 토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 아.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 :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동안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
- 자. 염전용 토지 :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소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토지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취득후 3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토지
-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池沼用)토지
- 나.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 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토지
- 라.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 제품 및 용기제조장용 토지와 이들 제품 및 골재·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토지
- 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호에서 “농경지”라 한다)·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 가.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임야에 한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는 임야와 동 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취득하는 묘포장용 농경지 또는 임야

나. 농경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

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경지·목장용지 또는 임야

8. 법인이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대(垵)·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

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나. 임차인이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 후 3년내에 제 7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

- 한 직장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
 4.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5.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나.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8.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③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 등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 공지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 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

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

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동항제3호나목 및 동항제4호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

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 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적합한 시설을 각각 갖춘 주유소·충전소 또는 매장과 그 부대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5.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 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
- 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 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 라.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 건축물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9. 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 2항제1호의 연평균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

제194조의7제2호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주용하천을 포함한다)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준단서중“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 84조의 4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2조제2항·제3항, 제55조제1항 본문·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제4항제80조제8항, 제80조의2제3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227조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단서, 제38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75조의2제2호, 제76조제1항제7호, 제80조제6항,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제84조의5제1항제4호, 제85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제102조제2항 후단, 제 105조의2제2호 단서, 제 124조제2항제24호, 제130조의5제1항 후단, 제136조의3제2호,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 제142조의2제2항, 제146조의 12제5항, 제148조제1항·제2항제15호, 제157조제2항 후단, 제163조제3항, 제175조제2항제6호, 제177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81조제1항 본문·제2항본문·제4항, 제182조제1항·제2항, 제183조제3항,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전단·제4호, 제199조의2제2항, 제201조제2항 단서, 제202조제1항제1호, 제203조제2호, 제204조제1항제2호, 제212조제1호, 제216조제2호다목, 제231조 본문 및 제232조중 “내무부령”을 각

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소속”을 “행정자치부소속”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제6호, 제227조제1호 및 제227조제2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